

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기본  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9 월 30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33호

붙임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233호

##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2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5만원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